#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7. 1.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  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6월 12일 이천시장
   나. 회부일자 : 1996년 6월 14일
   다. 상정일자 : 제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  제1차(96.6.22), 제2차(96.6.24) 내무위원회 상정
  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   가. 제안이유
   ● '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 법령에 따라 시세조례중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   나. 주요골자
   o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허용-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(가산금 제외) 500,000원 이하(안 제6조의2)
   o 주민세 법인 균등할중 기타법인에서 개인사업자(부가가치세 4,800만원이상 신고자)를 분리하여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하여 주민세 균등할50,000만원으로 함(안 제15조)
   o 시세조례 제25조(자동차세 신고의무)를 삭제하고, 제25조에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(안 제25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안봉환)
  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및 제196조의 조항이 법률 제4995(95.12.6)호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8조의 법률 조항삭제 및 조례 제25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,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용어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, 도서지역, 접적지역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수납과 납세고지서 매당 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비리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난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일부수정의결 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수정조례안 첨부

#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의2 제2항중 "500천원"을 "300천원"으로 한다.

(이하생략)

# 수정안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-|
| ( 신 설 ) | 제6조의2(세무공무원의 수납)<br>① ( 생 략 )<br><br>②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"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"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(가산금을 제외한다)이 5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. | 제6조의2(세무공무원의 수납)<br>① ( 현행과 같음 )<br><br>②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300천원----------<br>-------- |